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36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0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네이버파이낸셜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3.4.27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제4호, 동법 시행
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,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